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32 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송기헌·홍정민·이정문

양향자 · 이용빈 · 홍성국

서영석 · 송재호 · 김승원

조승래 · 양정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·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 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현재 법원은 건축, 의료,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,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음.

이에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54조의2 신설).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4조의2(전문심리위원)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 을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 - ④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을 지급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,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64조의3, 제164조의7 및 제164조의8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원"은 "심판장"으로 본다.
 -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심판관"은 "전문심

리위원"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 중 "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"를 "제154조, 제154조의2, 제15 5조부터 제166조까지"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4조의2(전문심리위원) ① 심
	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
	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
	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
	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
	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
	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	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
	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	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	④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
	<u>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</u>
	따라 수당을 지급하고, 필요한
	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, 일당
	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	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
	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
	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
	지, 제164조의3, 제164조의7 및
	제164조의8을 준용한다. 이 경
	우 "법원"은 "심판장"으로 본

<u>다.</u>

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
 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
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심판관"은 "전문심리위원"으로 본다.